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076

발의연월일: 2022. 6. 21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국·김두관

김병욱 · 김승남 · 노웅래

박찬대 · 송갑석 · 양경숙

임호선 • 전용기 • 최기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관세법」상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외국환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 로서 환전마진(수수료)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환율보다 높게 설 정되어 있음.

환전 시 통상적으로 환율우대를 적용받는 점, 수입업체가 기 보유하던 외화예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, 수입대금 원화결제가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업이실제 부담한 금액보다 과세가격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.

한편 개별세법 중 「관세법」만 유일하게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고 있으며, 다른 세법에서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고 있음. 미국, EU, 중국,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또한 과세환율로 기준환율을 사 용하고 있음.

이에 외화환산을 위한 환율 적용 시 '외국환매도율'을 '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'로 변경하여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자 함(안제18조).

법률 제 호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중 "외국환매도율"을 "「외국환거래법」 제5조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환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과세환율) 과세가격을 결	제18조(과세환율)
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	
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	
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(보세	
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	
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	
다)이 속하는 주의 전주(前週)	
의 <u>외국환매도율</u> 을 평균하여	「외국환거래법」 제5조에 따른
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.	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